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6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김태년·김영배·김준형

김태선 · 권칠승 · 한민수

박지원 · 김영진 · 박홍배

정준호 · 염태영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"반포등"이라 한다)할 목적으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"촬영물등"이라 한다)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·합성·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 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.

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1항 중 "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"를 "사람의"로, "5년"을 "7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5년"을 "7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7년"을 "1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     |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|
| 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        | 등) ① 사람의           |
| <u>사람의</u> 얼굴·신체 또는 음성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서 "영상물등"이라 한다)을 영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서 "편집등"이라 한다)한 자는        | <u>7년</u>          |
|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|                    |
|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         | ②                  |
| 물ㆍ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"편집물등"이라 한다) 또는 복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<u>7년</u>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| <u>7년</u>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③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<u>10년</u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 |
|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   |
|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  |
|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 |
| 처한다.               |
| <br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|